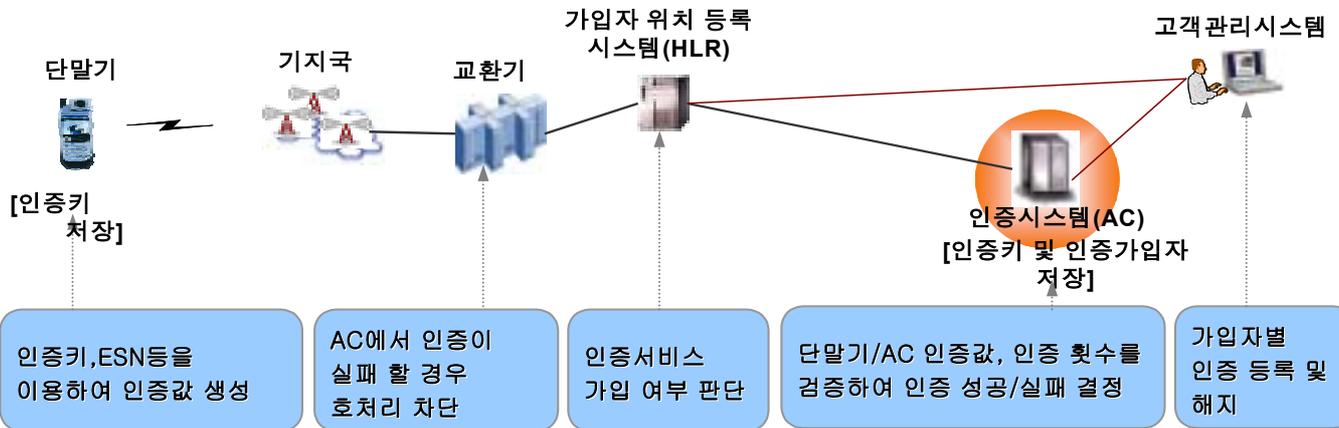


휴대폰 인증서비스 구성 및 인증수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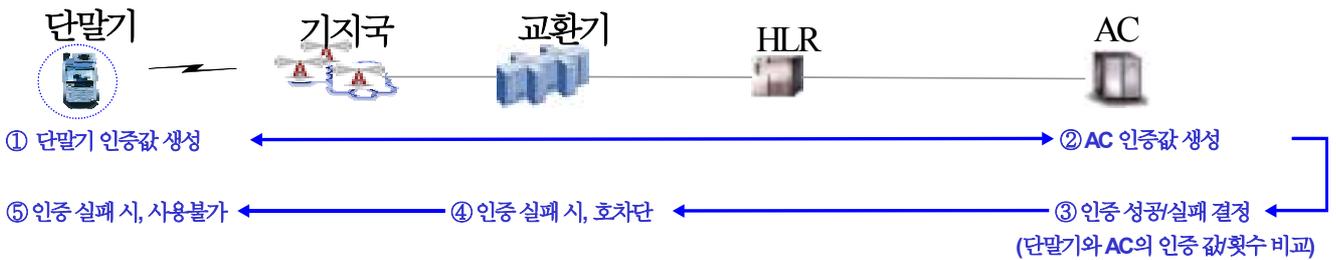
인증서비스 구성



※ 현재의 기술로는 인증키(A_Key)는 ESN과 달리 외부에 노출이 안되며 복제가 어려움

※ 인증키(Authentication-key) : 인증값(SSD: Shared Secret Data)를 만드는 파라미터로 단말기와 인증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영구적인 데이터

인증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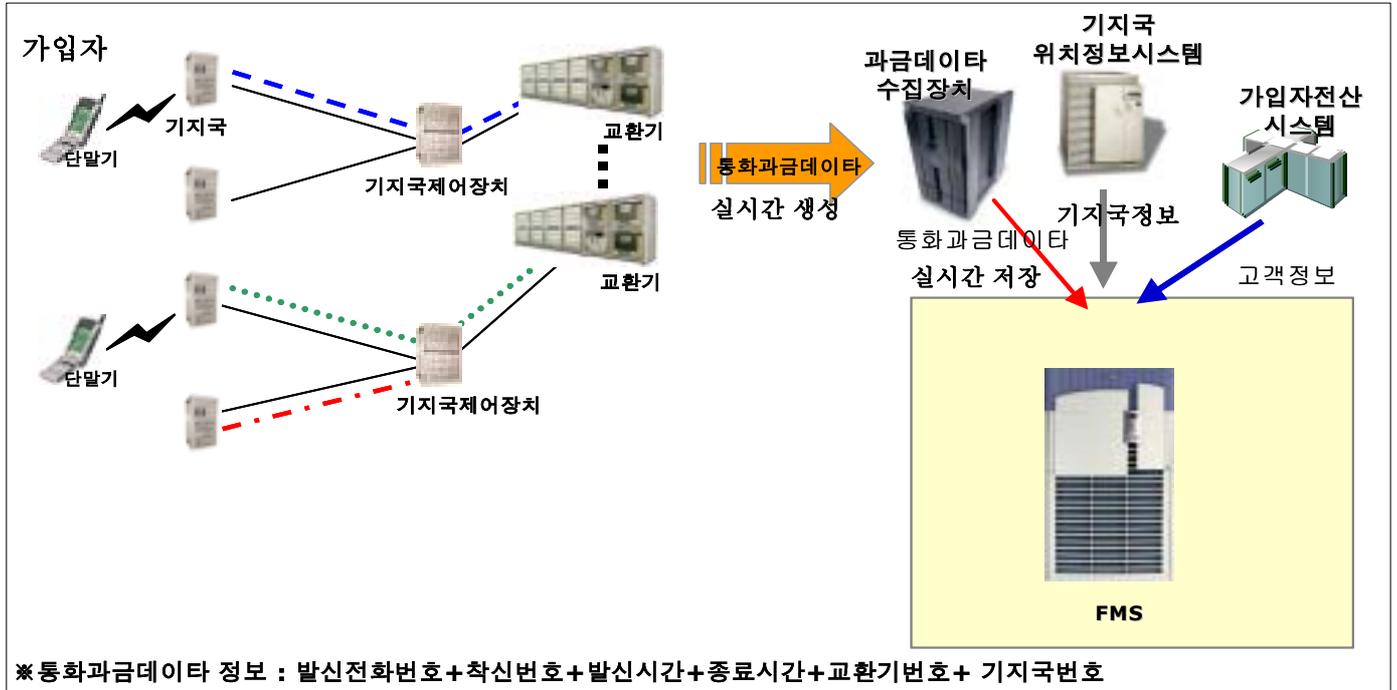
①, ② 단말기는 인증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인증값을 생성하고 AC에 인증값/인증횟수를 전달하며, AC도 단말기와 동일한 인증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인증값 생성

③ AC에서는 단말기 및 AC에서 생성된 인증값 및 인증횟수를 검증하여 인증 성공/실패 결정

④, ⑤ 인증 실패 시, 단말기는 사용하지 못하며 '인증 실패에 따른 단말 사용 불가에 대한 메시지를 단말에 표기

통화도용방지시스템 구성도 및 운영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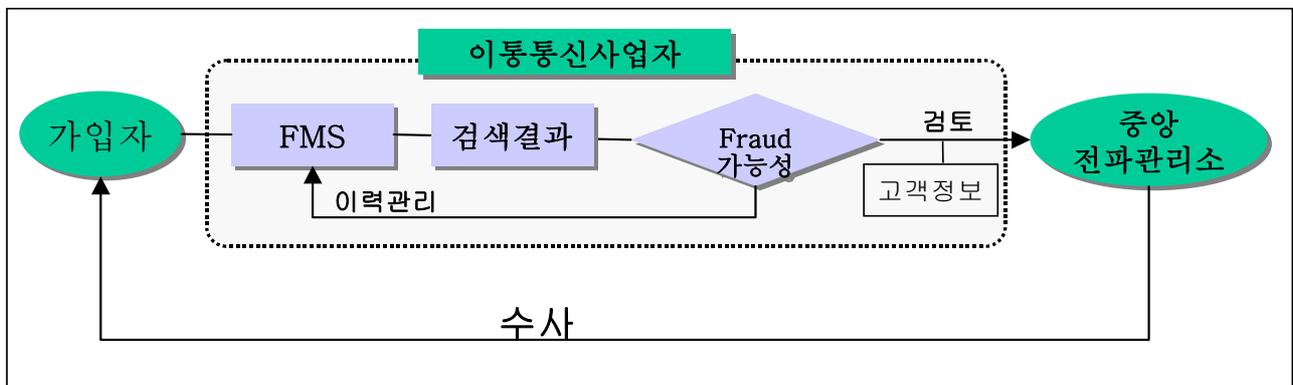
< FMS 운영도 >



※ FMS 검색내용

- 중복통화 검색 : 가입자의 일정시간 통화시간이 겹치는 중복통화를 체크
- 통화간 발신위치 비교 : 연속된 두 통화의 발신위치를 비교하여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발신통화를 점검
- 통화량 임계치 분석 : 단기간 내에 일정량이상 통화가 발생한 경우 불법 복제 의심건으로 파악

< FMS 운영절차 >



휴대폰 불법복제 관련 처벌 법규

○ 휴대폰을 복제한 자 : 형식등록 기기의 변조·개조·복제

- 전과법 제46조제1항(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 위반
- 전과법 제84조제3호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6조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 ①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하는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8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한 자

○ 복제 휴대폰을 사용한 자 : 무허가 무선국의 개설

- 전과법 제19조 및 전과법시행령 제29조제4호 위반
- 전과법 제87조제1호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19조 (무선국의 개설) ①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무선국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2조·제24조·제26조·제32조 및 제6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9조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 이동전화용 무선국
 2.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국
 3. 양방향무선호출용 무선국
 4. 개인휴대전화용 무선국
 5.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국
 6. 위성휴대통신용 무선국
 7. 가입자회선용 무선국
 8. 이동통신(IMT-2000)용 무선국
- 제8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

o 휴대폰 불법복제를 의뢰한 자 : 복제한 자와 공동정범

- 형법 제30조에 의거 복제한 자에 준하여 처벌

o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o 휴대폰 ESN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은자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3항 위반
-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o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17조 (벌칙)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